

보험계약법상 최근 쟁점

-2020년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Recent Issues in Insurance Contract Law

-Focusing on the 2020 Legislative Members Bill-

유 주 선**
Yoo, Ju Se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의사표시 권한 · |
| II. 보험금액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지급의
무 방안 | 책임과 고지의무의 수동화 방안 |
| III.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방안 | V. 결론 |

보험계약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불이익 역시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양자의 이익조화를 꾀하는 입법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 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협조 의무와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함께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확정적 회신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경우, 굳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의 재산상의

<https://doi.org/10.35148/ilsilr.2021.48.303>

투고일: 2021. 1. 13. / 심사회의일: 2021. 2. 4. / 게재확정일: 2021. 2. 15.

* 본 논문은 2020년 강남대학교 교내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입니다.

** 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공공인재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ocial Science, Kangnam University

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5년이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지시켜 주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은 부여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보수나 직급 등의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으로 하여금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보험설계사의 이직이나 해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의 수동화 방안에 대하여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정보비대칭 격차의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을 긍정한다.

[주제어] 보험금액 지급, 지연이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보험설계사, 고지의무 수동화

I. 서론

보험계약관계의 법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상법 보험편은 보험자에 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편의 구조는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제적 능력에서 열위의 지위에 있는 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률의 후견적 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법률 개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0년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보험계약법 관련 법안은 세 가지로 파악되고 있다. 첫 번째는 2020년 6월 16일 발의된 입법안으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이다.¹⁾ 두 번째는 2020년 11월 10일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험자의 보험금액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²⁾ 세 번째는 2020년 12월 23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험설계사의 의사표시 권한과 책임에 대한 내용 및 고지의무의 수동화 방안을 담고 있다.³⁾

본 논문에서는 2020년 국회에 발의된 세 가지 입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피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위한 발의안의 내용들이 상법에 반영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보험금액 지급기한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1)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568호.
2)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5160호.
3)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6904호.

II. 보험금액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지급의무 방안

1. 제안이유

상법 제658조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⁴⁾ 개정을 제안하는 자들은 이러한 상법 제658조의 내용이 보험금액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지 않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상법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한다.⁵⁾

물론,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규정되어 있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에 이러한 보험자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의무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금융감독기관이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정당한 권리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제안자들은 이에 대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다음의 개정 내용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4)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상법강의 IV) 제9판, 박영사, 2015, 142쪽 이하.

5)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5160호.

2.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第658條(保險金額의 支給)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第658條(保險金額의 支給)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보험금액을 지급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와 ‘약정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 현재 체계에서 후자에 대한 보완조치를 제시한다.⁶⁾ 상법 제658조를 개정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안 제658조제2항 신설).

그러므로 상법 일부에 대하여, 제6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이자를 보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자 한다.

3. 주요국의 입법례

3.1 일본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법 제21조 제2항에서, 보험금부를 이행할 기간을 정하지 않은

6)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215쪽 이하.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구상법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상법은 그 지급시기를, 보험금액을 정함에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하고 있다. 실무상 사고의 통지를 받은 다음 보험사고의 조사와 손해액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액이 정해진 후에야 보험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상법의 규정이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손해의 통지를 받은 후 조사를 위한 기간과 손해액과 보험금액의 확정을 위한 기간만큼 그 지급시기를 연장할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우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와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한 기간을 경과하기까지는 지연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조 제3항에서는 보험자가 제2항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 기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이 배제됨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생명보험 및 상해질병정액보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⁷⁾

3.2 독일

독일 보험계약법 제14조와 제91조를 통하여 보험금의 지급과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보험계약법 제14조는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이행 범위에 대한 확정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제1항). 하지만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보험자의 보험사고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손해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지급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소결

일본 법제를 보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생명보험이나 상해질병정액보험 영역에서 보다 손해보험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⁸⁾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나 전보손해액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지연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부에 대한 지연이자 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3항).

독일 법제는 일본 보험법과 유사한 점과 함께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⁹⁾ “보험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보험계약법 제14조), “보험사고 통지 후 1월이 경과하면 연 4% 이자가 가산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 일본 보험법은 손해보험 영역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법 제52조에, 상해질병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제81조에 지연이자 배제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8) 김선정, “일본 보험법개정에서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급지체”, 보험학회지 제85집, 한국보험학회, 2010, 175쪽 이하.

9) 유주선,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금급부의 지급기한”, 고려법학 제5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8쪽.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그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기간의 진행은 개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할 얻을 수 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사고 후 일정한기간 동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자 측의 협조가 요구된다는 점과 보험사고의 조사나 확인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태도라 하겠다.

III.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방안

1. 제안이유

현행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권은 3년내에 이를 행사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자들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자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권을 행사해도, 보험자 측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지연을 통하여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¹⁰⁾

또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와 보험금 지급범위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의 우려와 함께, 보험소비자 보호를 보다 더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제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시효 연장과 시효정지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고자 한다.

10)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568호.

2.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 3. 11.]	제662조(소멸시효) ① ----- --5년----- -----5년----- -----.
<신 설>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662조 제1항의 보험금청구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과, 같은 조에 제2항에 시효정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한다. 즉, 현재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하고 있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하여 5년으로 개정하는 측면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기 전까지는 소멸시효의 정지를 통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안 제662조).

3. 주요국의 입법례

3.1 일본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2년, 후자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었으나, 양자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일본 보험법은 공히 3년으로 두고 있었다(구 보험법 제95조).¹¹⁾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산점은 일본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기점으로 삼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일본 보험법은 소멸시효에 대한 기간과 그 기산점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다. 보험법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을 모두 민법 규정에 따라

11) 김선정, “일본의 보험법개정과 시사점 - 총론과 공통규정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38쪽; 박은경,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163쪽 이하.

준용하고자 하는 입법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2017년 6월 2일 일본은 채권법에 대한 내용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민법의 경우 단기소멸시효 및 상사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상해질병손해보험 모두 민법 규정에 준용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3.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모든 보험의 경우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두고,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10년으로 하여 그 기간을 대폭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입법태도를 보여주고 있다.¹²⁾

3.3 독일

보험계약법 제15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는 보험자의 지급거절의 결정이 청구권자에게 텍스트형식으로 도달할 때까지 정지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그 기간에 대하여는 독일 보험계약법 입법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독일 민법 제194조는 소멸시효기간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195조에서 일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독일 민법 제195조는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으로 3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법 제15조와 민법 제195조를 토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신청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의 시효기간과 그 기간은 보험자의 지급거절의 결정이 청구권자에게 텍스트형식으로 도달할 때까지 정지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12) 프랑스 보험법 제114-1조 참조.

4. 소결

4.1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사항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는 2016년 두 건의 판결에서 촉발되었다.¹³⁾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법적 안정성과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¹⁴⁾

우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발생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상법은 민법과 달리 그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안은 그 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 연장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4.2 기산점에 관한 사항

독일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독일 민법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준용 태도는 소멸시효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시대 조류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동시에 사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시효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방안 대신에 독일 보험계약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결정이 청구권자에게 확정적인 회신을 도달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상법 보험편에 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4.3 보험자 결정의 도달

보험사고가 보험기간에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

1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본소), 2016다218720(반소).

14) 유주선, 보험법(최신 개정판), 씨아이알출판사, 2018, 296쪽 이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독일 보험계약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결정과 그 결정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도달되어야 함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타당한 입법 태도라 판단된다. 소멸시효가 개시되기 위한 요건으로 보험자 결정의 보험계약자 측에 도달이 요구되고, 그 결정이 보험계약자 측에 도달되었다는 증명은 보험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의사표시 권한 · 책임과 고지의무의 수동화 방안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고지의 의무의 수동화 방안으로,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해야 함을 제시한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¹⁵⁾

2. 주요 내용

현 행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u>보험대리상</u>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u>보험대리상</u>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u>보험대리상</u>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생 략) 第651條(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 契約解除)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な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는-----. 1.~4. (현행과 같음) ②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의-----. ③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가-----. ④ (현행과 같음) 第651條(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 契約解除) 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內에, 契約를 締結한 날로부터 3年內에 限하여 契約를 解除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651條의2(書面에 의한 質問의 效力) 保險者가 書面으로 質問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推定한다.	-----. -----. ②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 제>

개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646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보험대리상은”을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의 보험설계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험대리상의”를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의 보험설계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대리상이”를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의 보험설계사가”로 하여, 보험대리상이 갖는 권리를 보험설계사에게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둘째, 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重要な 事項”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고지의무의 수동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제2항에서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신설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측 보호는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강화되는 면이 발생한다.

넷째, 제651조의2를 삭제한다.

3. 주요국의 경우

3.1 독일

3.1.1 보험설계사의 대리권 관련 내용

독일 보험계약법 제7절에는 보험중개자와 보험상담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69조는 보험자나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영업상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체결할 권한은 위임받은 자를 보험대리인으로(제2항), 보험자나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의 중개나 체결을 영업으로 인수한 자를 보험중개사로 정의하고 있다(제3항).

한편, 우리의 보험설계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보험상담사라고 하는 또 다른 보험판매보조자를 두고 있다(제4항). 여기서 보험상담사는 법적인 대리인은 아니지만 보험자의 위임을 받고서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자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 자는 대리인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이 자의 행위를 통하여 보험자에게 귀속하는 것도 아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69조는 보험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 관련 수동대리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제1항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관련 청약의 의사표시나 그와 관련된 이의사항, 고지의무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제1호),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및 이의, 해지, 철회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의사표시를 보험대리인은 수령할 권한이 있다(제2호). 또한 보험대리인은 보험자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이나 연장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다(제3호).

독일 보험계약법 제70조는 “보험자의 인지여부가 중요한 경우 보험대리인의 인지여부는 보험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보험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업무 외에서, 그리고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상법 제646조는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우리 상법 제646조와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70조 후단의 내용은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 문헌과 동일한 해석의 결과를 갖는다고 하겠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71조는 ‘계약대리권’이라는 제목으로 “보험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있는 보험대리인의 경우 계약의 변경이나 연장 합의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교부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69조와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69조가 수동대리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면, 제71조는 능동대리 측면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겠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72조는 제69조에서 제71조에 규정된 보험대리인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을 통하여 보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보험계약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3.1.2 고지의무의 수동화 방안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고지의무의 수동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동법 제19조 제1항은 이러한 면을 드러내 주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는 자신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과 물어야 할 사항을 텍스트 형식으로 질의를 해야 한다.

3.2 프랑스

프랑스는 1989년 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고지의무의 수동화 방식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험법 제113-2조 제2항을 보면, 보험자는 보험자 자신이 인수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험고지양식에 따른 질문을 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사실대로 응답을 하면, 그의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 상법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자발적인 고지의무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3.3 동아시아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수동화는 보험법 제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조에 따르면, 먼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지를 구하는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¹⁶⁾ 고지를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 시 사실의 고지를 다 하면 그의 고지의무는 이행되는 것이다. 생명보험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수동화는 동법 제37조에서 발견된다.

중국 역시 고지의무 수동화방식을 도입한 상태다.¹⁷⁾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시다.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목적물이나 피보험자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이 문의사항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검토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보험설계사의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 교부 권한 및 책임 인정¹⁸⁾과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법정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다고 본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에서 다수의 계약이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¹⁹⁾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재직기간이라든가 임금체계 또는 수익구조 등을 검토해 보면, 하나의 통일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보험계약 관련 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이로 인한 부담감은 대리권을 부여한 보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대리권을

16) 일본 보험법 제4조 참조.

17) 중국 보험법 제16조 참조.

18) 반대 입장에서 유주선, “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보험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3, 7쪽 이하; 찬성 입장에서 맹수석,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부여방안에 관한 검토”, 금융법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20, 23쪽 이하.

19) 보험설계사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로는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논거로는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97쪽.

인정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동적 고지의무화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자 책임의 명확화 방안으로 바람직한 태도로 판단된다.²⁰⁾ 프랑스는 1989년 보험법을 개정하여 ‘계약체결 시 보험자 자신이 인수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로의 변경하였고, 독일은 2007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하여 고지의무 수동화방안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본 역시 2008년 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을 한 바 있다.²¹⁾ 유럽 주요 선진국과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개정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²²⁾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고지의무의 수동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2020년 국회에 발의된 보험계약법 관련 입법안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해 보았다. 보험계약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불이익 역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양자의 이익조화를 꾀하는 입법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 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협조의무와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함께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확정적 회신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경우, 굳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의 재산상

20) 한기정, “고지의무의 수동화-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응답의무로-”, 비교사법 제16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336쪽 이하; 유주선, “고지의무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경기법조 제20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13, 786쪽 이하; 최병규, “외국의 개정 보험계약법과 고지의무의 나아갈 방향”, 경영법률 제19집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3쪽 이하.

21)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보험연수원, 230쪽.

22) 세계적 조류에 대하여는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149쪽; 특히, 영국의 입법적 동향에 대하여는 박세민, 보험법 제5판, 2019, 222쪽.

의 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5년이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는지의문이다. 오히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지시켜 주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셋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은 부여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보수나 직급 등의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는 보험자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의 수동화 방안에 대하여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정보 비대칭 격차가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을 긍정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유주선, 보험법(최신개정판), 씨아이알출판사, 2018.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상법강의 IV) 제9판, 박영사, 2015.
-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2. 학술지

- 김선정, “일본 보험법개정에서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급지체”, 보험학회지 제85집, 한국보험학회, 2010, 175-178쪽.
- _____, “일본의 보험법개정과 시사점 - 총론과 공통규정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38-48쪽.
- 맹수석,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부여방안에 관한 검토”, 금융법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20, 23-29쪽.
- 박은경,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163-164쪽.
- 유주선, “고지의무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경기법조 제20호, 수원지방법변호사회, 2013, 786-788쪽.
- _____, “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보험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3, 7-8쪽.
- _____,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금급부의 지급기한”, 고려법학 제59호, 2010,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8-37쪽.

최병규, “외국의 개정 보험계약법과 고지의무의 나아갈 방향”, 경영법률 제19집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3-21쪽.

한기정, “고지의무의 수동화-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응답의무로-”, 비교사법 제16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336-351쪽.

[Abstract]

Recent Issues in Insurance Contract Law**—Focusing on the 2020 Legislative Members Bill—**

Yoo, Ju Seon*

The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s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only protect the interests of policyholders and insureds, but also should not cause disadvantages of the insurers, and should maintain a legislative attitude to harmoniz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In consideration of this aspect,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presented.

First, in case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amount is delayed, we do not object to the bill that stipulates delay interest payment obligations for the number of the delay days.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equality of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r, if there is a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s obligation to cooperate,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the progress of the period will be suspended.

Second, with extending the expiration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to 5 years, in the case of the content that the expiration of prescription rights for insurance claims will be suspended until a definitive reply from the insurer to the insurance claim by the policy hold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extending it from 3 years to 5 years will be of great significance. It is unlikely that a person who can claim an advantage in his or her property will wait five years before exercising that right. Rather, a plan is required to clearly recognize that it is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against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Third, it is not desirable to give insurance agents the agency right to sign insurance contracts. In the absence of a system such as remuneration or rank, uniformly granting the right of proxy is likely to be a serious burden on the insurer and the side effects such as turnover or dismissal of an existing insurance agent may occur. However, regarding the passivation of notification obligations, with the consideration on the international coherence aspect and on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ocial Science, Kangnam University

having been narrowing the gap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olicyholder and insurer, we affirm its introduction.

[Key Words]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Delay Interest, The Expiration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Agents, The Passivation of Notification Obligations